

# 골재채취업

◆ 등록기준 [골재채취업]

업종	자본금	시설·장비	사무실	
수중골재채취업	법인 : 10억원 이상	·[건설기계관리법]에 의한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1대 이상 ·로더 1대 이상 (바켓용량 2.5세제곱미터 이상) ·굴삭기 1대 이상 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	사무실	
	개인 : 20억원 이상			·쇄석기 또는 선별기 1대 이상 (쇄석기 시간당 100톤 이상, 선별기 시간당 50톤 이상)
바다골재채취업	법인 : 15억원 이상	·바다골재채취선 1척 이상 (시간대별 속도·위치·항행거리 등을 자동기록할 수 있는 선박위치측정기 장착) ·골재운반선 1척 이상 ·로더 1대 이상 (바켓용량 2.5세제곱미터 이상)		
	개인 : 30억 이상			·제염시설 1식 ·염분측정시험실 (염분측정기, 건조기, 측정저울 각 1대 이상)(시험실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) ·접안시설 및 야적장
산림골재채취업	법인 : 10억원 이상	·쇄석시설 1식 이상 (시간당 100톤 이상) ·로우더 1대 이상 (바켓용량 2.5세제곱미터 이상) ·굴삭기 1대 이상 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		사무실
	개인 : 20억원 이상			
육상골재채취업	법인 : 3억원 이상	·로우더 1대 이상 (바켓용량 2.5세제곱미터 이상) ·굴삭기 1대 이상 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		
	개인 : 6억원 이상		·선별기 1대 이상 (시간당 50톤 이상)	
골재선별·파쇄업	법인 : 1억원 이상	·간이쇄석시설 1식 이상 (시간당 100톤 이상) ·로우더 1대 이상 (바켓용량 2.5세제곱미터 이상) ·굴삭기 1대 이상 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		
	개인 : 2억원 이상		·로우더 1대 이상 (바켓용량 2.5세제곱미터 이상) ·굴삭기 또는 기중기 1대 이상 (바켓용량 0.7세제곱미터 이상)	
바다골재선별·세척업	법인 : 3억원 이상	·제염시설 1식 ·염분측정시험실(염분측정기, 건조기, 측정저울 각 1대 이상) (시험실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)		
	개인 : 6억원 이상		·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	

◆ 기술인력

※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.

이 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·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

가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및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·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·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동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.

- (1) 쇄석시설: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능사 자격,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6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.
- (2) 바다골재채취선: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
- (3) 제염시설·선별기: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계 직무 분야 자격 중 기계조립기능사·정밀측정기능사·건설기계정비기능사·기계정비기능사·농기계정비기능사·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, 재료 직무 분야 자격 중 용접기능사·특수용접기능사 자격, 전기·전자 직무 분야 자격 중 전기기능사 자격, 건설 직무 분야 자격 중 배관기능사 자격

**◆시설,장비**

- 가. 장비중 「건설기계관리법」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당해 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.
- 나.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시설 및 장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- 다. 시설·장비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(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「선박등기법」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)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)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 - 2) 「해운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
  - 3)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·허가·계약·승낙 등을 받아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.  
다만,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4) 바다골재채취업자, 골재선별·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·세척업자가 야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·허가·계약·승낙 등을 받아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. 다만,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라. 하나의 선박이 바다골재의 채취 및 운반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·장비기준중 바다골재채취선과 골재운반선을 각각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.
- 마.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·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.
- 바. 시설·장비의 규격중 로우더 및 굴삭기의 바켓용량은 산적용량을 기준으로 한다.

**◆등록기준에 대한 특례**

- 가.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2종류 이상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.
- (1) 서로 중복되는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의 경우 :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  - (2) 자본금의 경우 :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- 나.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 또는 면허기준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등록 또는 면허기준에 따라 갖추고 있는 자본금,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을 골재채취업등록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, 시설·장비 및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**◆사무실**

- \*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, 축사, 퇴비사, 온실, 저장고등 농업,임업,축산,어업 용 건물, 그 밖에 상시 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

**◆신규등록 소요기간**

- \*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등록증 발급